

입 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2024-184호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 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안 제2조) 상위법 반영 조항 개정사항 정비
 -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동물”

→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 (안 제3조) 도로명 주소

- “조곡동 131-5” → “역전길 50”

○ (안 제5조제1항) 운영시간 단순화

- “운영시간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안 제5조제2항) 매표규정 삭제

- “입장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삭제>

○ (안 제5조제3항제1호) 휴관일 매주 월요일 고정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휴관” → <삭제>

○ (안 제6조제1항) [별표 1] 이용료 요금표 삭제

- 1일·연간 정액이용료 규정을 사람과 동물을 구분한 동종업종 시세로 반영

○ (안 제6조제2항) [별표 2] 이용료 감경 기준표 삭제

- 조문에 반영된 내용으로 별지 불필요

○ (안 제7조제1항) [별표 3]을 별지로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 23. ~ 2024. 2. 12.(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 장(동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팩스) 061-749-4703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조례개정 의견서 서식 1부. 끝.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조곡동 131-5번지”를 “역전길 50”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주 월요일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 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반려동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업종 시세 변동을 반영한 내부 규정에 따라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u> -----.</p>
<p>제3조(위치) 순천시가 설치하는 반려동물문화센터(이하“반려동물문화센터”라 한다)는 순천시 <u>조곡동 131-5번지</u>에 둔다.</p>	<p>제3조(위치) ----- ----- ----- <u>역전길 50</u>-----.</p>
<p>제5조(운영시간 등) ① <u>반려동물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p> <p>1. <u>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u></p> <p>2. <u>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u></p> <p>② <u>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u></p> <p>③ <u>반려동물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u></p> <p>2. 3. (생략)</p>	<p>제5조(운영시간 등) ① <u>반려동물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③ ----- -----.</p> <p>1. <u>매주 월요일</u></p> <p>2.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⑤ (생략)</p> <p>제6조(이용료 등) ① 반려동물문화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p> <p>1.~ 6. (생략)</p> <p>[별표 3]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환급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전액 환급 그 밖의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입장료 <table border="1" data-bbox="220 1330 691 1478">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환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td> <td>입장료 전액 환급</td> </tr> <tr> <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td> <td>환급 없음</td> </tr> <tr> <td>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td> <td>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td> </tr> </tbody> </table> <p>나. 연간이용료</p> <table border="1" data-bbox="220 1516 691 1800">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환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결제 후 이용 전</td> <td>이용료 전액 환급</td> </tr> <tr> <td>결제 후 이용 중</td> <td>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td> </tr> <tr> <td>-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td> <td>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급</td> </tr> <tr> <td rowspan="3">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결제 후 이용 전</td> <td>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td> </tr> <tr> <td>결제 후 이용 중</td> <td>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td> </tr> <tr> <td>-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td> <td>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이용료의 20% 배상</td> </tr> </tbody> </table>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입장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이용 중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결제 후 이용 중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이용료의 20% 배상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이용료 등) ① 반려동물문화 센터의 반려동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업종 시세 변동을 반영한 내부 규정에 따라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p> <p>1.~ 6.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환급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전액 환급 그 밖의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장료 <table border="1" data-bbox="823 1357 1369 1532">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환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td> <td>입장료 전액 환급</td> </tr> <tr> <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td> <td>환급 없음</td> </tr> <tr> <td>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td> <td>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td> </tr> </tbody> </table> <p>나. 체험학습비</p> <table border="1" data-bbox="823 1574 1369 177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환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 <td>체험시작 전 취소</td> <td>체험학습비 전액 환급</td> </tr> <tr> <td>체험시작 후 취소</td> <td>환급 없음</td> </tr> <tr> <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 <td>체험 취소 또는 연기</td> <td>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td> </tr> <tr> <td>체험 30분 이상 지연</td> <td>체험학습비의 10% 환급</td> </tr> </tbody> </table>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입장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	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학습비의 10%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입장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이용 중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결제 후 이용 중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이용료의 20% 배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입장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																																																			
	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학습비의 10% 환급																																																			

현행	개정안																																																																																													
<p>다. 체험학습비</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구분</th> <th colspan="2">환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 <td>체험시작 전 취소</td> <td>체험학습비 전액 환급</td> </tr> <tr> <td>체험시작 후 취소</td> <td>환급 없음</td> </tr> <tr> <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 <td>체험 취소 또는 연기</td> <td>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td> </tr> <tr> <td>체험 30분 이상 지연</td> <td>체험학습비의 10% 환급</td> </tr> </tbody> </table> <p>라. 교육 수강료</p> <p>1) 강습기간 : 1월 이내</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구분</th> <th colspan="2">환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교습개시 전</td> <td>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td> </tr> <tr> <td rowspan="2">교습개시 후</td> <td>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td> </tr> <tr> <td>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td> </tr> <tr> <td>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교습개시 전</td> <td>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td> </tr> <tr> <td></td> <td>교습개시 후</td> <td>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td> </tr> </tbody> </table> <p>2) 강습기간 : 1월 이상</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구분</th> <th colspan="2">환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교습개시 전</td> <td>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td> </tr> <tr> <td>교습개시 후</td> <td>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td> </tr> <tr> <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교습개시 전</td> <td>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td> </tr> <tr> <td>교습개시 후</td> <td>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td> </tr> </tbody> </table>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	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학습비의 10%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경지될 때: 전액 환급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전액 환급 3. 그 밖의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 <p>가. 입장료</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구분</th> <th colspan="2">환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td> <td>입장료 전액 환급</td> </tr> <tr> <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td> <td>환급 없음</td> </tr> <tr> <td>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td> <td>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td> </tr> </tbody> </table> <p>나. 체험학습비</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구분</th> <th colspan="2">환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 <td>체험시작 전 취소</td> <td>체험학습비 전액 환급</td> </tr> <tr> <td>체험시작 후 취소</td> <td>환급 없음</td> </tr> <tr> <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 <td>체험 취소 또는 연기</td> <td>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td> </tr> <tr> <td>체험 30분 이상 지연</td> <td>체험학습비의 10% 환급</td> </tr> </tbody> </table> <p>다. 교육 수강료</p> <p>1) 강습기간 : 1월 이내</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구분</th> <th colspan="2">환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교습개시 전</td> <td>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td> </tr> <tr> <td rowspan="3">교습개시 후</td> <td>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td> </tr> <tr> <td>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td> </tr> <tr> <td>미환급</td> </tr> <tr> <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교습개시 전</td> <td>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td> </tr> <tr> <td>교습개시 후</td> <td>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td> </tr> </tbody> </table> <p>2) 강습기간 : 1월 이상</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5%;">구분</th> <th colspan="2">환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교습개시 전</td> <td>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td> </tr> <tr> <td>교습개시 후</td> <td>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td> </tr> <tr> <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 <td>교습개시 전</td> <td>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td> </tr> <tr> <td>교습개시 후</td> <td>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td> </tr> </tbody> </table>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입장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	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학습비의 10%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																																																																																												
	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학습비의 10%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입장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																																																																																												
	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학습비의 10%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순천시 공고 제2024-187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 2024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 조정 및 신축건물 증가(원룸 등)에 따른 분리 요구 따른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별표 2] 왕조1동 관할구역 : 3개통 9개반 신설
 - 골드클래스 3차 아파트 : 75통 ~ 76통(신설)
 - 조례택지 원룸 등 신축건물 : 10통(일부 조정), 77통(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 23. ~ 2024. 2. 12.(20일간)

4. 의견 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2일 18:00까지 순천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630, FAX : 061-749-4640)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왕조1동란 중 10통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74통란 다음에 75통, 76통, 77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왕조1동	10	1	조례동 1695, 1697-1 ~ 12, 1712-1 ~ 10, 1713-1 ~ 10, 1714-1 ~ 9, 1721-1 ~ 9
		2	조례동 1696-1 ~ 14, 1704-1 ~ 11
	75	1	조례동 1890 골드클래스 3차 아파트 상가동, 301동
		2	302동
		3	303동
		4	304동
	76	1	305동
		2	306동
		3	307동
		4	308동
	77	1	조례동 705-1 ~ 8, 1707-1 ~ 14, 1711-1 ~ 12
		2	조례동 1342, 1706-1 ~ 10, 1708-1 ~ 8, 1709-1 ~ 8, 1710-1 ~ 2, 1719-1 ~ 17, 1720-1 ~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왕조1동	9	6	(생략)	왕조1동	9	6	(현행과 같음)
	10	1	조례동 1695, 1697-1 ~ 1697-12, 1712-1 ~ 1712-9, 1713-1 ~ 1713-9, 1714-1 ~ 1714-9, 1721-1 ~ 1721-9		10	1	조례동 1695 1697-1 ~ 12 1712-1 ~ 10 1713-1 ~ 10 1714-1 ~ 9 1721-1 ~ 9
		2	조례동 1696-1 ~ 1696-9, 1704-1 ~ 1704-5, 1705-1 ~ 1705-2, 1707-1 ~ 1707-9, 1708-1 ~ 1708-6, 1711-1 ~ 1711-9			2	조례동 1696-1 ~ 14 1704-1 ~ 11
		3	조례동 1706-1 ~ 1706-5, 1709-1 ~ 1709-6, 1710-1 ~ 1710-2, 1719-1 ~ 1719-17, 1720-1 ~ 1720-9, 1194-6				
	11	1	(생략)		11	1	(현행과 같음)

	74	3	(생략)		74	3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75	1	조례동 1890 골드클래스 3차 아파트 상가동, 301동
		<신설>	<신설>			2	302동
		<신설>	<신설>			3	303동
		<신설>	<신설>			4	304동
	<신설>	<신설>	<신설>		76	1	305동
		<신설>	<신설>			2	306동
		<신설>	<신설>			3	307동
		<신설>	<신설>			4	308동
	<신설>	<신설>	<신설>		77	1	조례동 1705-1 ~ 8 1707-1 ~ 14 1711-1 ~ 12
		<신설>	<신설>			2	조례동 1342, 1706-1 ~ 10 1708-1 ~ 8, 1709-1 ~ 8, 1710-1 ~ 2, 1719-1 ~ 17, 1720-1 ~ 1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	성 반 대		

순천시 공고 제2024-203호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세부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일부개정, 2023. 6. 11.시행)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변경
 - (구성인원) 7인 이내 ⇒ 10명 이내
 - (부위원장) 국장 ⇒ 과장
 - (임 기) 연임 가능 ⇒ 한 차례만 연임
-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
- 지명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 23. ~ 2024. 2. 13. (22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 061-749-5869

- 붙임 1.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8조의2에 따라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천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 도로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은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신과 서면심의회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범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순천시 공고 제2024-209호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순 천 시 장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박람회 이후 소형경전철 요금 및 갈대열차 등 관련 체계 재정비

2. 주요내용

- 발권방법 관련 조문 개정(제6조)
- 갈대열차 관련 조문 개정(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 23. ~ 2024. 2. 13.(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정원

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팩스) 061-749-2817

- 붙임 1.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편도권, 왕복권, 통합권으로 하며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및 소형경전철 정거장에서” 를 “편도권, 왕복권으로 하며 소형경전철 정거장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임시휴무,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을 “임시휴무, 이용제한”으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소형경전철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청소년, 군인	8,000원	6,000원	
	어린이, 유아	6,000원	5,000원	
순천시민	성인, 청소년, 군인	5,000원	4,000원	
	어린이	4,000원	3,000원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원	5,500원	
	청소년, 군인	5,000원	3,500원	
	어린이, 유아	4,000원	3,000원	
	순천지역 초/중/고등학교	3,000원	2,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면제 대상 >

1. 국민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소형경전철 관련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순천시민인 유아. 단,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시 탑승 가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비 고 >

1. “유아”란 3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발권방법) 발권은 <u>편도권, 왕복권, 통합권</u>으로 하며 <u>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및 소형경전철 정거장에서</u> 발권한다. 다만,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u> 무인 발권 및 인터넷 예약 발권을 할 수 있다.</p>	<p>제6조(발권방법) ----- <u>편도권, 왕복권</u>으로 하며 <u>소형경전철 정거장에서</u> ----- ----- ----- ----- -----.</p>
<p>제11조(갈대열차) ① <u>갈대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u> 다만, <u>별표 2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제11조(갈대열차) <삭 제></p>
<p>② <u>소형경전철 탑승권 소지자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본다.</u></p>	<p>① ----- <u>이용료를</u> ----- ---</p>
<p>③ <u>갈대열차의 운행시간, 정기휴무, 임시휴무,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u></p>	<p>② ----- --- <u>임시휴무, 이용제한,</u> ----- ----- <u>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를</u> ----- -----.</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단일권 (소형경전철갈대열차)		통합권	비고
		왕복	편도	(국가정원, 순천읍지, 순천만습지, 순천경전철갈대열차)	
일반 권	성인	8,000	6,000	14,000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천 시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5,000	4,000	4,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 순천시민 1년 회원권 ·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 관람료 면제자		· 단일권 왕복 탑승 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단, 국가정원 동서문매표소, 순천만습지 입구 매표소 발권 시에만 할인 적용)			

구 분		소형경전철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청소년, 군인	8,000	6,000	
	어린이, 유아	6,000	5,000	
순천시민	성인, 청소년, 군인	5,000	4,000	
	어린이	4,000	3,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어린이, 유아	4,000	3,000	
	순천지역 초/중/고등학교	3,000	2,000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면제 대상 >

1. 국민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원행 또는 소형경전철 관련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순천시민인 유아, 단,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시 탑승 가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면제 대상 >

1. 국민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원행 또는 소형경전철 관련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순천시민인 유아, 단,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시 탑승 가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비 고 >

1. “유아”란 3세 이상 ~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 비 고 >

1. “유아”란 3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p>7. “1년권”이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4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p> <p>8.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p> <p>9. “관광지 통합입장권”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 자연휴양림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p> <p>10. “관람료 면제자”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관람료를 면제받아 무료로 입장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갈대열차 이용료(조례 제11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35%;">이 용 료</th> <th style="width: 5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관 랐 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인</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인</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5세 이상, 장애인</td> </tr> </tbody> </table> <p><면제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인”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구 분	이 용 료	비 고	관 랐 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소인	2,000원	65세 이상, 장애인	<p><삭 제></p>
구 분	이 용 료	비 고									
관 랐 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소인	2,000원									
	65세 이상, 장애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순천시 공고 제2024-210호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순천시 CI 개발 완료()에 따른 조례 개정 절차 추진

2. 주요내용

- 제2조(정의) 및 제3조(상징물 종류·의미) : 조문 일부 삭제
 - (삭제)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마스코트, **브랜드 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 종류·의미) : 별표 개정 및 삭제
 - (개정) 별표 1(심볼마크, ) , 별표 4(시기, ) , 별표 5(회장, )
 - (삭제) 별표 3(브랜드슬로건, )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 23. ~ 2024. 2. 13. (22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일류 도시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팩스) 061-749-4586

붙임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브랜드슬로건, 동물”을 “동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심 볼”을 “위 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워드마크】



워드마크는 순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천혜의 자연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미래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린 디자인이다.

시민들이 'SUNCHEON' 을 직접 그리며 진취적으로 나아감을 역동적인 붓터치에 담아냈다.

또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세계 속의 도시, 순천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영문형 워드마크이다.

순천시의 워드마크 중 ‘ S ’모양은 순천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순천만 습지의 물길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며 날아오르는 흑두루미를 나타낸다.

휘감고 있는 형태의 ‘ C ’는 생태, 문화, 관광, 미래경제, 복지·의료 등 전 분야를 선도하며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  ’는 도심 속에 자리한 순천의 대표적인 산인 ‘봉화산’을 표현하여 생태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며 세계속의 도시로 비상하는 순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워드마크 작도법

워드마크가 가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극대화하고 순천시의 올바른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워드마크 활용원칙을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워드마크의 재생은 컴퓨터 데이터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생자료를 사진복제의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본 항에 제시된 비례규정(Grid System)에 따라 정확하게 작도하여야 한다. 본 작도법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리드(Grid) 포인트(Point)를 찾아서 작도한다.



전용색상 선정

전용색상은 워드마크와 더불어 순천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아래 예시는 별색규정으로 활용 시 본 매뉴얼에 수록된 PANTONE Color 규정에 따라 조색되어야 한다. 순천시의 전용색상은 흑두루미 블랙(SCC-N005) / 오천광장 그린(SCC-N026) / 순천만 오렌지(SCC-N008) / 짙뚱어 블루(SCC-N032)이다. 적용매체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CI 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흑두루미 블랙
 SCC-N005
 R 68 G 64 B 78
 C 78 M 76 Y 59 K 25



오천광장 그린
 SCC-N026
 R 108 G 153 B 49
 C 65 M 29 Y 100



순천만 오렌지
 SCC-N008
 R 229 G 102 B 70
 C 11 M 73 Y 71



짙뚱어 블루
 SCC-N032
 R 77 G 148 B 168
 C 71 M 33 Y 32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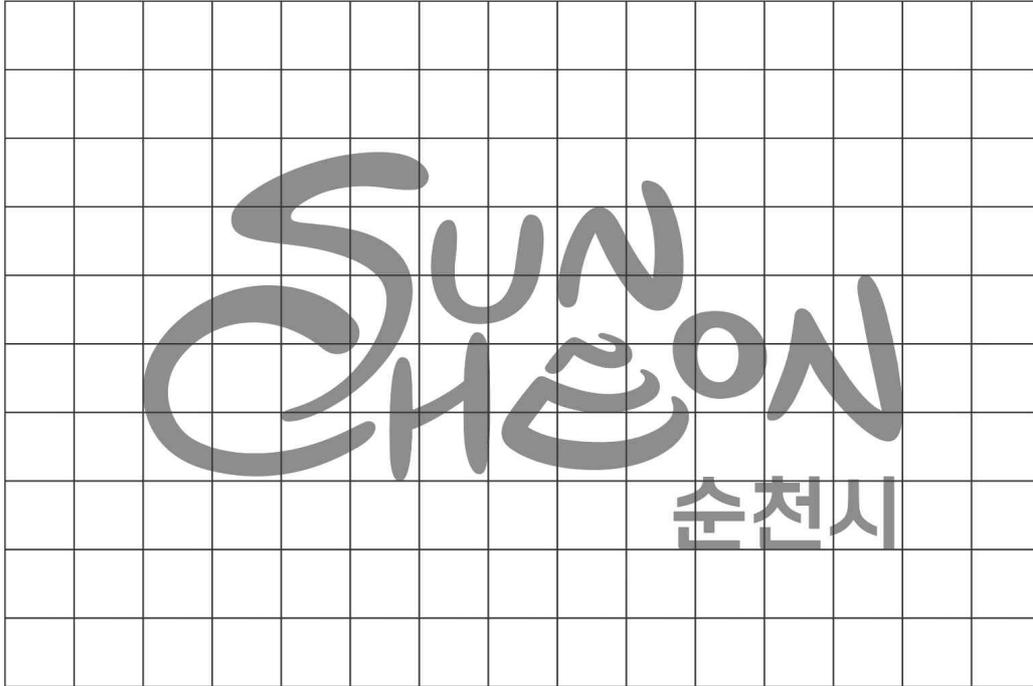
시기의 규격과 모양



1. 규격

- 본기, 행사용 : 120cm×80cm
- 가로기 : 135cm×70cm
- 계양기 : 210cm×140cm(대)
- 수기 : 30cm×20cm
- 150cm×100cm(소)

순천시 MARK 및 FLAG 디자인



가로 : 세로 비율은 3:2

글씨크기는 가로길이 1/15이며, 글씨체는 순천시 로고타입 서체를 사용

[별표 5]

휘장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한다



엠블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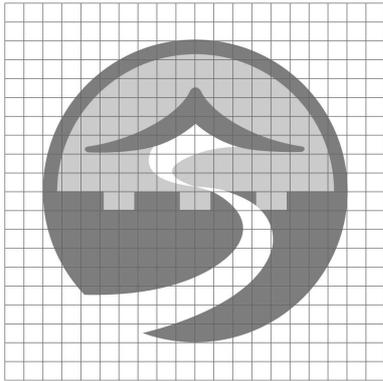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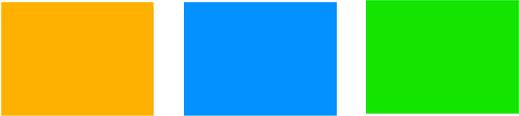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마스코트, <u>브랜드슬로건</u>,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p> <p>제3조(상징물의 종류 · 의미)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 볼 마 크 : “별표 1” 2. (생 략) 3. <u>브랜드슬로건</u> : “별표 3” 4. ~ 6. (생 략) <p>[별표 1]</p>	<p>제2조(정의) ----- ----- ----- 동물----- -----.</p> <p>제3조(상징물의 종류 · 의미)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워 드 ----- 2. (현행과 같음)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 6. (현행과 같음) <p>[별표 1]</p>
<p>【심볼마크】</p> <div data-bbox="279 1400 598 1713" data-label="Image"> </div> <p>심볼마크는 순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p>	<p>【워드마크】</p> <div data-bbox="845 1478 1324 1691" data-label="Image"> </div> <p>워드마크는 순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p>

현행	개정안
<p>순천시의 심볼마크중  모양은 전통기와지붕의 형상으로 순천시가 전통과 역사가 숨쉬는 도시임을 나타내며 ‘사람人’의 모습을 상징한다. 또한 하늘로 힘차게 상승하는 방향표시으로써 21세기 중심도시로써 웅비하는 순천시의 모습이기도 하다.</p> <p> 모양은 낙안읍성의 성곽형태를 모던하게 표현하였고 3개의 옐로우색 윤곽은 순천시가 교육, 산업, 관광 도시를 의미하며 4개의 브라운 경계부분은 문화, 예술, 교통, 전통을 나타낸다.</p> <p>외곽형태인  은 떠오르는 태양의 형태를 나타내며 순천시민의 일체감을 나타낸다.</p> <p> 모양은 순천시 이니셜 ‘S’를 시각화한 것으로 뻗어나가는 미래 비전과 발전상을 나타내며 순천만 갯벌에 힘찬 물줄기를 상징하며 순천인의 힘찬 기상을 상징하기도 한다.</p> <p>심볼마크 작도법</p> <p>심볼마크가 가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극대화 시키고 순천시의 올바른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심볼마크 활용원칙을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p> <p>심볼마크의 재생은 컴퓨터데이터 활용을 원칙으로 하여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생자료를 사진복제의 방식으로 이용하거나</p>	<p>대표적 상징물이다.</p> <p>천혜의 자연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미래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린 디자인이다.</p> <p>시민들이 ‘SUNCHEON’ 을 직접 그리며 진취적으로 나아감을 역동적인 붓터치에 담아냈다.</p> <p>또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세계 속의 도시, 순천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영문형 워드마크이다.</p> <p>순천시의 워드마크 중 ‘’ 모양은 순천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순천만 습지의 물길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며 날아오르는 흑두루미를 나타낸다.</p> <p>휘감고 있는 형태의 ‘’ 는 생태, 문화, 관광, 미래경제, 복지·의료 등 전 분야를 선도하며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p> <p>‘’ 는 도심 속에 자리한 순천의 대표적인 산인 ‘봉화산’을 표현하여 생태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며 세계속의 도시로 비상하는 순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p> <p>워드마크 작도법</p> <p>워드마크가 가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극대화하고 순천시의 올바른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워드마크 활용원칙을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본 항에 제시된 비례규정(Grid System)에 따라 정확하게 작도하여야 한다. 본 작도법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리드(Grid) 포인트(Point)를 찾아서 작도한다.</p> <p>전용색상 선정</p>  <p>전용색상은 심볼마크, 로고타입과 더불어 순천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아래 예시는 별색규정으로 활용시 본 매뉴얼에 수록된 재생원고 또는 디아이씨(DIC Color) 규정에 따라 조색 되어야 한다. 순천시의 전용색상은 주색(Main Color)인 순천 밤색이며, 보조색인 노랑색, 청색, 녹색, 빨강색, 금색, 은색이다. 적용매체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는 C.I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p> <p>주색(Main Color)</p>  <p>순천시 밤색 or DIC 322C</p> <p>보조색(Sud Color)</p>	<p>워드마크의 재생은 컴퓨터 데이터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생자료를 사진복제의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본 항에 제시된 비례규정(Grid System)에 따라 정확하게 작도하여야 한다. 본 작도법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리드(Grid) 포인트(Point)를 찾아서 작도한다.</p>  <p>전용색상 선정</p> <p>전용색상은 워드마크와 더불어 순천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아래 예시는 별색규정으로 활용 시 본 매뉴얼에 수록된 PANTONE Color 규정에 따라 조색되어야 한다. 순천시의 전용색상은 흑두루미 블랙(SCC-N005) / 오천광장 그린(SCC-N026) / 순천만 노을 오렌지(SCC-N008) / 짙둥어 블루(SCC-N032)이다. 적용매체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CI 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순천시 노랑색 or DIC 165C 순천시 청색 or DIC 182C 순천시 녹색 or DIC 2560C</p>  <p>순천시 빨강색 or DIC 2497C 순천시 금색 or DIC 620C 순천시 은색 or DIC 621C</p>	 <p>흑두루미 블랙 SCC-N005 R 68 G 64 B 78 C 78 M 76 Y 59 K 25</p>  <p>오천광장 그린 SCC-N026 R 108 G 153 B 49 C 65 M 29 Y 100</p>  <p>순천만 오렌지 SCC-N008 R 229 G 102 B 70 C 11 M 73 Y 71</p>  <p>짱뚱어 블루 SCC-N032 R 77 G 148 B 168 C 71 M 33 Y 32</p>
<p>[별표 3] 브랜드슬로건 모양과 의미</p> <p>1. 모양</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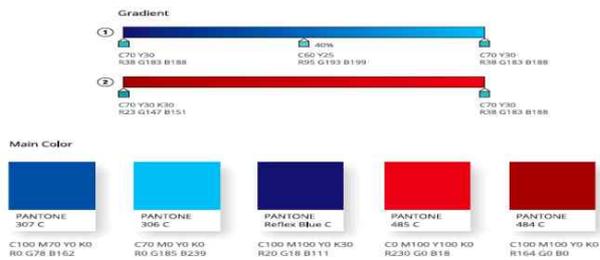
2. 의미

순천시의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은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 상징물이다. 순천시의 브랜드 슬로건 ‘人(in) Suncheon’은 사람 인(人)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 도시임을 붓터치로 표현했다.

특히 영문 in은 미국, 유럽 등 비한자권 국가들의 이해를 도와 전 세계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되었으며, sun과 on의 빨간색은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슬로건 人(in) 앞에는 순천시 및 시민들이 담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자유롭게 담아서 표현이 가능하다.

3. 색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시기의 규격과 모양

시기의 규격과 모양



1. 규격

- 본기, 행사용 : 120cm×80cm
- 가로 기 : 135cm×70cm
- 계 양 기 : 210cm×140cm(대)
- 수 기 : 30cm×20cm
- 150cm×100cm(소)

1. 규격

- 본기, 행사용 : 120cm×80cm
- 가로 기 : 135cm×70cm
- 계 양 기 : 210cm×140cm(대)
- 수 기 : 30cm×20cm
- 150cm×100cm(소)

2. 전체바탕색은 백색으로 하고 마크는 

  는 밤색,  노랑색,

 은 백색으로 하며, “순천시”글씨체는 로고타입으로 하면 흑색으로 표시한다.

순천시 MARK 및 FLAG 디자인

순천시 MARK 및 FLAG 디자인

가로 : 세로 비율은 3:2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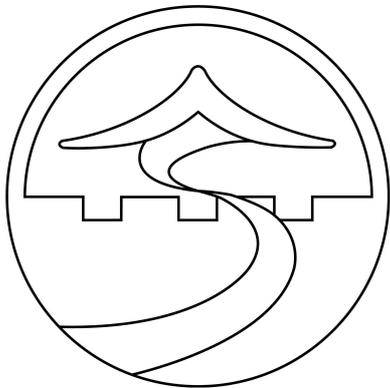


글씨크기는 가로길이 1/15이며, 글씨체는 순천시 로고타입 서체를 사용

[별표 5]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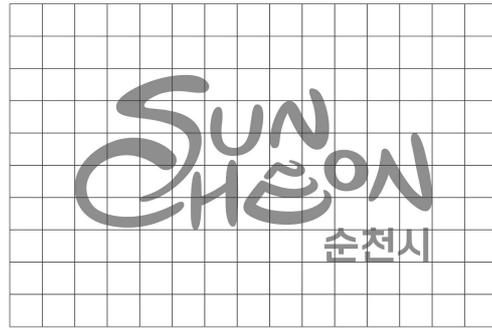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한다



휘장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한다.

개 정 안



가로 : 세로 비율은 3:2

글씨크기는 가로길이 1/15이며, 글씨체는 순천시 로고타입 서체를 사용

[별표 5]

휘장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한다



엠블럼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한다.

현 행	개 정 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